

#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관행과 고용실태\*

김 유 빈\*\*

## I. 머리말

방송산업은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축이 되는 현 시대에 있어 국가의 핵심자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적 소비의 특성을 지닌 방송산업이 개인의 경제·사회·정치적 정체성과 더불어, 시민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방송산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지금까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산업의 거래관행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은 적지 않았다. 2017년 발생한 방송PD들의 연이은 죽음은 방송산업 내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과 방송산업 종사자들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방송·영상 제작환경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 계약관계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방송·문화 콘텐츠의 질 향상을 담보로 방송제작자들은 비합리적인 제작비 절감을 강요받아 왔으며, 방송제작의 일선 주체인 스태프들 역시 휴식 보장이 없는 장시간근로 속에서 과로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고는 방송산업 중 방송영상물 제작업을 중심으로 한국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실태와 그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글은 김유빈 외(2017), 『방송통신산업 공정거래 정착의 고용효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kim@kli.re.kr).

## II. 방송 노동시장의 특성과 거래관행

방송 노동시장을 둘러싼 최근 논쟁의 시발점은 앞서 언급한 故 박환성, 김광일 PD의 죽음(2017년 7월 14일)이다. 두 독립제작사 PD는 교육방송에 납품할 다큐멘터리 제작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두 PD의 죽음은 외면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실상은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두 PD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 충당을 위해 정부 주관 제작지원금에 지원 후 선정되었으나, 이를 확인한 방송사는 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요구된 이러한 불공정행태가 비용제약하에서 운전을 포함한 모든 제작과정을 두 PD에게 책임지우면서, 그들의 죽음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선 故 이한빛 PD의 죽음(2016년 10월 26일)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 선택의 이면에는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근로실태와 언어폭력, 관리자로서 비정규 계약직의 해고에 관여하면서 괴로워했던 생전의 기억을 유서에 남겼음을 고려할 때, 이 PD의 죽음 역시 방송산업 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 착취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방송 노동시장의 특성

방송 노동시장은 산업 내 요소시장이 분화되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거래에 있어 방송사를 중심으로 요소시장간 수평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송사를 정점으로 각 요소시장이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원·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수직적 원·하청 거래관계는 방송산업 내 각종 불공정 거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관행에 밀접히 노출되어 있으며, 수직적 원·하청구조의 말단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외주 독립제작사이다.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는 532개 사업체로, 관련 종사자 수는 7,282명(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악되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개별화된 특수고용형태의 프리랜서들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영상 독립제작 시장은 사업체 수가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매출액 역시 8.7% 증가하는 등 일견 양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방송산업 사업체 현황(2015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 매출액	1인당 평균 매출액
지상파방송	71	14,378	4,111,452	57,908	286
유선방송	143	4,631	2,261,690	15,816	488
위성방송	1	340	549,612	549,612	1,617
방송채널사업	178	15,170	6,222,446	34,958	410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29	577	2,174,284	74,975	3,768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532	7,282	1,143,498	2,149	15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재인용.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4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30.6%, 5~9인 미만 사업체가 25.0%를 차지하는 등 영세규모의 사업체가 시장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 자금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장의 퇴·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액 현황 역시 총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1인당 평균 매출액의 수준에 있어서는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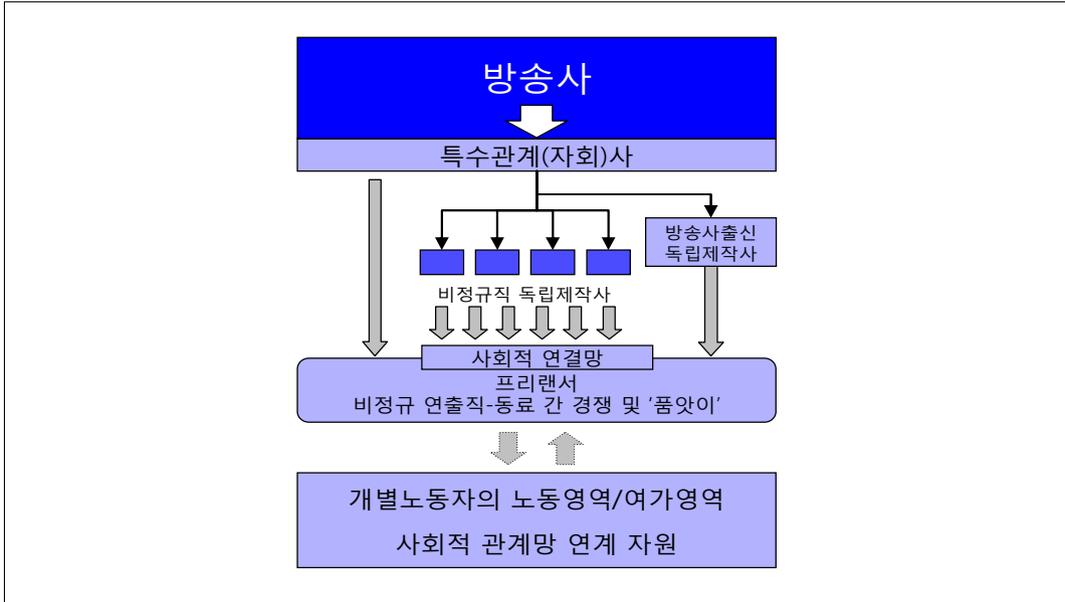
(단위: %)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전 체
사업체 수	164 (30.6)	133 (25.0)	213 (40.0)	19 (3.6)	4 (0.8)	532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재인용.

방송영상 독립제작사의 노동시장 제약 상황의 이면에는 마찬가지로 방송사와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간 지배권력상의 구조적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다. 외주화 제작과 편성 단계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와 외주 독립제작사 간 하도급 구조는 방송사와 특수 관계사가 독립제작사를 매개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고용·관리하는 위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외주제작 원·하청 구조는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와 그 외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형태의 프리랜서로 노동자들이 관계망을 매개로 일상생활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낮은 제작단가를 보충하며 방송상품을 제작 후 납품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납품 후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권리 대부분이 방송사로 이전되면서 이윤분배가 방송사 내에 한해 이루어지는 구조로, 낙수효과 없는 이러한 분배구조는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저하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외주제작 원·하청 구조



자료 : 송용한(2011) 재구성.

## 2.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관행

이와 같은 방송산업 내의 계층화된 원·하청 구조는 방송사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송사로 하여금 거래관계 전반에 있어 방송콘텐츠의 전 생산·유통 과정을 통제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송용한, 2011).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은 계약 전 단계 - 계약단계 - 제작단계 - 제작 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단계에 있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약 전 단계에 있어 방송사는 외주 및 용역 공모에 있어 공개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자의적 심사기준을 행사하여 불투명한 외주·용역을 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모과정에서 외주제작사가 제출한 기획안이 낙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경우 기획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방송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 방송사가 기획안을 변형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타 외주제작사에 제작을 의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외주제작의 경우,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계약 전에 외부 협찬을 의무화하거나 강요하고, 협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사로 귀속시키거나 외주제작비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사와 외주 독립제작사 간 계약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구두로 편성을 맺고,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제작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방·편성권, 저작권 등 방송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방송사에 귀속시키면서도 제작과정이나 방송결과물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계약행태가 만연해 있다.

제작·납품 후 단계에서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거나, 요구 불이행시 일어나는 폭언, 강압 등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하나의 영상물을 복수의 외주제작사에게 수주하여 제작단가 경쟁을 일으키고, 제작비는 최종적으로 방송사가 선택한 외주제작사에 한해 지급하는 불공정행태도 파악되고 있다. 방송에 채택되지 않은 일부 외주제작물에 대해 방송사가 제작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제작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외주제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강압적으로 외

〈표 3〉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불공정거래 관행 유형 및 주요 내용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관계	계약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투명한 외주·용역 공모: 외주·용역의 경우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방송사에서 자의적으로 인적 관계 등을 통해 불투명한 외주·용역 시행</li> <li>- 무상 기획안 요구: 외주 공모에 응하기 위해 기획안을 제출해야 함. 공모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기획안을 돌려주지 않고 무상으로 방송사가 소유. 이후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사 기획안을 변형해 방송을 제작하거나 다른 외주제작사로 외주제작을 의뢰함.</li> <li>- 협찬 강요: 외주제작의 경우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계약전에 외부 협찬을 의무화하거나 강요. 협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사로 귀속시키거나 외주제작비에서 제함.</li> </ul>
	계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미작성 또는 사후 계약서 작성: 방송사가 구두로 편성 약속을 하고, 외주제작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하는 문제</li> <li>- 불공정한 계약 내용: 낮은 비용의 외주제작 강제, 방송제작과정이나 방송결과물에 대한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외주제작사가 부담,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방송사에 귀속 등</li> </ul>
	제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의 자의적 제작 단계 개입: 외주제작물에 대한 시사 과정을 통해 또는 자의적으로 수시 외주제작 과정에 개입, 불공정한 요구 강요</li> <li>- 복수의 외주제작사 투입과 경쟁 조장: 하나의 외주제작물을 복수의 외주제작사가 동시에 제작하게 하고 경쟁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방송사가 선택(일부 동일한 외주제작물을 위해 동일한 촬영 현장에서 복수의 외주제작사가 만나 서로 촬영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도 존재)</li> <li>- 인권 침해: 방송사나 외주·용역사, 동료 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발생</li> </ul>
	제작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의 외주제작물에 대한 제작비 미지급: 극히 일부 불방 외주제작물에 대해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대해 제작비의 일부를 보전하기도 하나 대부분 제작비 미지급</li> <li>- 일방적 외주제작 해지: 외주제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방송사 자의로 외주제작사 변경 또는 프로그램 폐지 등</li> <li>- 저작권 독점: 방송콘텐츠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편집 전 촬영본 등 모든 권한을 방송사에 귀속</li> </ul>

자료: 김유빈 외(2017), 재인용.

주제작사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한 사례도 발견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콘텐츠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제작 전 단계에서의 촬영본 등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방송사에 귀속하도록 강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국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일선에 있는 방송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스태프들은 노동시장 진입경로에서부터 인맥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자리의 지속여부에 있어 방송사 및 소속PD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이거나 비용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지상파나 종편에 소속된 방송스태프들이 정해진 근로시간, 연차·휴일 및 복지수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비해 외주 독립제작사의 방송스태프들은 실무 능력에 있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샘·휴일근무·추가 촬영 등 장시간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적절한 보수를 수령받지 못해 생계형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일자리 주변부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송산업 종사자들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복지수혜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4대보험 가입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표 4〉 방송사 내 불공정 고용관계

		불공정거래 관행 유형 및 주요 내용
방송산업 내 고용관계	계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미작성 또는 구두계약: 방송산업 내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근로·하도급·업무위탁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계약서 미작성. 계약을 하더라도 서면계약보다 구두계약이 일반적임.</li> <li>- 근로자성 부인: 작가뿐 아니라 PD 등 방송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일부는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 작성.</li> </ul>
	고용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노동 관련 보호법 배제: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노동조합 설립도 어려움.</li> <li>- 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련 보호법 위반: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종사자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은 장시간 노동 대비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노동 관련 보호법 위반</li> <li>- 인권 침해: 방송사나 외주·용역사, 동료 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발생</li> </ul>
	4대 사회 보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배제되는 문제</li> <li>-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4대보험 가입 제외 요청하는 경우 발생. 이를 통해 건강보험은 가족 등을 통해 가입하는 형태</li> <li>-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인</li> </ul>

### 3.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실태

전문가집단 및 방송산업 관계자들은 외주 독립제작사의 침체된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정한 이윤분배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물은 유통구조 및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파생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제작사의 경우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익구조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적정수준의 제작단가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해당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수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작사의 정규직 고용 및 표준계약서 작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이하 BBC)은 방영권료를 지불한 프로그램의 사용 권리를 특정 기간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모든 상업적 사용권은 독립제작사에게 부여하고 있다(유의선 외, 2012). 저작권과 관련해 BBC는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저작권에 한해 5년간의 독점적 라이선스와 합의에 따른 2년 연장 권리만을 가지며, 이 외 모든 상업적 이용권한은 독립제작사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외주전문채널 지상파인 채널4의 경우에는 핵심 저작권(Core Rights)을 3년간 확보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BBC의 시행규칙과 다르지만, 2차 저작권과 국제적 권한에 있어서는 BBC와 동일하게 독립제작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획득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외주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제작비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외주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인정 및 이용 권리가 보다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이 설정될 경우, 2차 판권 판매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제작비가 추가적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기존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원·하청 지배구조하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산정 및 범위에 대한 근거요건을 기존 저작물 관련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프로그램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법원은 영상저작물의 기획이나 자본 투자 등의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라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1999. 9. 12. 선고 99라130 판결).”

“단순히 제작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제작자의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움(서울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카합256 판결).”

2016년 1월, 청주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에 있어 저작권의 발

생요건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판례에 따르면, SBS와 청주방송은 충북방송을 상대로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가입자당 17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토록 판결하였다. 본 판례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재송신권을 지상파 방송사의 적법권리로 인정한 사례이나, 이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저작권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참고해 볼 수 있다. 김유빈 외(2017)는 이에 따라 외주 독립제작사의 지적재산권 설정을 가정하고, 이것이 독립제작사 및 해당 종사자들에게 미칠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인정에 따른 고용효과를 연간 1,351.1명으로, 방송 외주제작사 1개 사업체당 평균 고용효과는 2.54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 III. 맺음말

방송산업은 산업구조 및 거래관행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대표적 산업 중 하나이다. 방송산업의 거래구조는 타 산업에 비해서도 비교적 복잡한 종속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주·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 불안정성이 큰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방송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관행과 방송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방송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및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 방송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송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방송산업 내 공정거래 정착 및 일자리 창출효과 개선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익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저작권 인정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외주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저작권 인정은 이의 일환이다.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제작비를 통해 추가 고용창출과 기존 근로자의 근로실태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방송산업 내 자리잡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BBC와 같이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외주시행규칙의 마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BBC의 외주시행규칙은 발주계약, 감독 및 모니터링, 지불금액, 실천규칙에 관한 내용과 함께 분쟁해결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동등위치 확립, 윤리적 기준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 단, 저작권 인정으로 인한 외주업체의 매출액 증대가 고용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매출액 증가의 고용 낙수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KL**

### [참고문헌]

- 김유빈 외(2017), 『방송통신산업 공정거래 정착의 고용효과』, 2017 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 송용한(2011), 「방송콘텐츠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비정규 연출직의 노동생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의선 외(2012), 「외주정책의 주요현안과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